

●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2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 상세기준(개정) >

분과	코드 번호	코드명	기준 내용
고압가스 합동분과 (제조· 충전 및 냉동기· 특정설비)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916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안	개정
	AA917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안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고압가스 판매·저장 ·사용 분과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x.do)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044-203-5182)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 합동분과 (제조·충전 및 냉동기·특 정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용량 용기(Y-실린더) 보관을 위한 실린더캐비닛 구조 기준 명확화(AA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적 125L 이상의 대용량 용기 실린더캐비닛에 대한 적용대상 규정, 설치장소, 감지기 등 설치, 살수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 신설 ○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AA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고법에 따른 특정설비 중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적용 및 경과조치 사항 신설 -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일반제조시설로 검사받은 노광장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 (부품사용제한) 노광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이 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인 경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 (제조시설기준) 제조자가 노광장비 제조를 위한 필수설비를 갖추도록 제조시설기준 규정 - (재료) 노광장비를 구성하는 배관계, 기기류, 그 밖에 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재료 기준 및 노광장비의 사용금지 재료 규정 - (두께) 노광장비 내부의 가스설비 및 배관은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않고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두께 계산식 규정 - (구조 및 치수) 노광장비의 안전성, 편리성 및 작동성 확보를 위해 내부 점검·확인 가능 구조, 배관 절연설비 설치, 가스 종류 및 흐름방향 표시, 압력계 설치, 과압안전장치 설치 등 구조 기준 규정 - (가공) 노광장비의 배관계에 대한 절단면 및 세정 기준, 굽힘 시 과대 응력 집중 방지 기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공 기준 규정 - (용접) 노광장비의 배관계는 용접부의 기계적 강도와 기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접부 결함, 용접부 비드폭·높이 등 용접성능 규정 - (성능) 노광장비의 특성 고려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 성능을 내압성능, 기밀성능 및 용접성능으로 구분하여 규정 	AA913 AA916 AA917 FP112 (총 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준) 노광장비의 검사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AA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고법에 따른 특정설비 중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적용 및 세정설비의 용어 정의 규정 - (경과조치) 종전에 실증특례 시설로 검사에 합격한 세정설비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 - (부품사용제한) 제조자가 세정설비에 사용하는 부품이 고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인 경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 (제조시설기준) 제조자가 세정설비 제조를 위한 필수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 (재료) 세정설비를 구성하는 배관계, 기기류, 그 밖에 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재료 기준 및 세정설비의 사용 제한 재료 규정 - (두께) 세정설비 내부의 가스설비와 배관은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않고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두께 계산식을 규정 - (구조 및 치수) 세정설비 구성, 누출로부터 위해가 없도록 운전압력 모니터링 등 안전시스템 구축, 회수·제어 로직 등 안전성, 편리성 등 구조 기준 마련 - (가공) 세정설비의 배관계에 대한 절단면 및 세정 기준, 굽힘 시 과대 응력 집중 방지 기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공 기준을 규정 - (용접) 세정설비의 배관계는 용접부의 기계적 강도와 기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접부 결함, 용접부 비드폭·높이 등 용접성능 규정 - (성능) 성능기준은 세정설비의 제품성능, 작동성능으로 구분하고, 세정설비의 제품 및 작동의 안전성을 확인토록 규정 - (검사기준) 세정설비의 검사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 세정설비 설치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 제외토록 합리화(FP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에 따라 세정설비 설치 시설에 대해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보호시설과의 거리 적용 제외
--	---

<p>고압가스 판매·저장· 사용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용량 용기(Y-실린더) 보관을 위한 실린더캐비닛의 설치 기준 합리화(FU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치 추가 설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조건으로 대용량 용기(Y-실린더) 보관을 위한 실린더캐비닛의 제조 및 설치 허용 ○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사용시설의 검사범위 명확화(FU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설비로부터 첫 번째 감압설비까지의 시설은 저장소 시설로, 그 외의 시설은 사용시설로 구분 ○ 안전밸브의 조정주기의 기산점 명확화(FU111, FS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밸브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여야 하며, 해당 조정 주기의 기산점을 설치일로 명시 ○ 저장탱크 설치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법령 부합화(FU211, FS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저장탱크 설치에 관한 준용규정의 적용범위를 고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설치·운영 및 검사'에서 '시설기준'으로 수정 ○ 용기보관실 최소면적 기준 명확화(FS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보관실의 최소면적 확보 기준(10 m²)의 적용대상을 고법 시행규칙과 같이 산소·독성·가연성가스별로 확보하도록 문구 및 배치 조정 	<p>FU111 FU211 FU212 FS111 FS112</p> <p>(총 5종)</p>
---------------------------------	---	--